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

◇ 제·개정 이유

-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승계할 수 있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발명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94호, 2021. 4. 20. 공포, 10. 21. 시행)되고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의 제명이 「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(대통령령 제32074호, 2021. 10. 19. 공포, 10. 2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직무발명의 범위 확대

- 고시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등(국가공무원 및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)의 직무발명으로 확대

나. 전용실시계약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

- 전용실시 희망자가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, 특허청장이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전용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전용실시권자가 계약일 60일 이내에 최소실시료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

다.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조건 마련

-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
- 사업화하기 위해 후속연구 또는 허가·등록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
-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기 어려운 경우
- 전용실시기간에 비해 사업화로 인한 수익이 부족한 경우